

제1917호

고양시보

2022년 10월 11일(화)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22 - 2526호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2-328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한국국제전시장 1, 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0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2-2512호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 62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우리 시의 공용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임시차량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 나. 신규차량의 교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
- 다. 전용차량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라. 임시차량 정수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 마.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및 고정배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
- 바. 전용 및 의전용 차량 규모를 변경함(안 별표 1).
-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산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재산관리과 차량관리팀(031-8075-2548)

- 팩 스 : 031-8075-495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차차량”을 “임시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차차량”을 “임시차량”으로,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를 “임차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운전원”을 “운전직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감안”을 “고려”로, “차량 총괄부서”를 “차량총괄부서”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차량의 교체)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체하려는 차량은 별표 1의 신규차량 교체기준을 충족하지 않고서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입 및 임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로, “구매 비율”을 “구입 및 임차비율”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차량교환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업무 및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차량 용도를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관리·운행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의 신규구입·교체구입·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 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배정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예정인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할 차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했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중 “정수배정”을 “차량정수배정”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차량의 관리방법)”을 “(차량의 관리 및 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전원”을 “운전직원”으로, “일괄”을 “한꺼번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원”을 “운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마크”를 “심벌마크”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차량은 지정된 차고지에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배차·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시장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한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
3.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하여 다른 지역에 숙박하는 경우

⑦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 요청

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승인(취소) 확인서를 통보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차고지 별도지정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⑧ 감사·조사 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용 차량의 고정배차가 필요한 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1월 재요청 승인을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승인(취소)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취소) 확인서를 통보하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⑩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승인 시 필요한 경우 운전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및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배차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집중관리부서에 차량배차를 신청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차량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직사령에게 배차신청을 해야 한다.

제20조(배차승인) ①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차량배차신청 허가는 당직사령이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를 “유류의 잔량 등을 확인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원”을 “운전직원”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량 총괄부서”를 “차량총괄부서”로, “이용하여”를 “이용하여 다음”으로, “서류에 대하여”를 “서류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차고지 운영)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차고지 내에는 운전직원 대기실·주차장·세차장·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직원의 관리 등 차고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원은 차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운전원 관리”를 “운전직원 관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운전원”을 “운전직원”으로, “주의 의무로서”를 “주의의무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원”을 “운전직원”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원”을 “운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취하지”를 “하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1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중 “운전원”을 각각 “운전직원”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배차기준) 집중관리부서는 직원자가운전자의 면허종류 및 나이에 따라 배차를 승인한다. 다만, LPG차량 및 긴급차량은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정하여 승인한다.

제37조(차량확인)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운행 전 유류 잔량 및 차량의 외관 등을 확인한 후 운행해야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관외출장 중 유류 주입이 필요한 경우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38조(운행종료)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운행 후 차량 배차 시스템 내의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이를 알려주어 정비·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중관리부서에서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자를 대신하여 운행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 근무시간 이후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한 후 차량열쇠를 집중관리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당직실에 반납해야 한다.

⑤ 당직사령은 당직 중 차량운행허가, 운행차량 입고 여부 확인 등 차량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규모 또는 유형별	
		대형·중형·소형·경형· 다목적승용차	중형·소형·경형· 다목적승용차
가. 시 본청	41대	9대 • 시장 전용 1대 • 부시장 전용 2대 • 3급 이상 공무원 전용 3대 • 의전용 3대	업무용 32대

나. 구청	17대	• 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16대
다. 사업소	6대	-	업무용 6대
라. 시의회	4대	3대 • 의장 전용 1대 • 3급 이상 공무원 전용 1대 • 의전용 1대	업무용 1대

별지 제1호서식 중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를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제9조의2”로, “차명”을 “차 이름”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차량정수 배정 차량 관리전환 차량 교체승인 임시차량 정수배정	확인서 송부
-------	--	--------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 구입 중이거나 교체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라 배정 또는 교체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재산관리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재산관리과장 김 학 배
	팀 장 성 명	차량관리팀장 박 동 각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효 섬 031-8075-2548

[별표 1]

공용차량의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 배정대상 및 신규차량 교체기준(제4조 관련)

용도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신규차량 교체기준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
1. 승용 (전용)	가. 대형·중형·소형· 경형·다목적승용차 (3,500cc 이하)	- 시장 - 시의회 의장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나. 대형·중형·소형· 경형·다목적승용차 (3,000cc 이하)	- 부시장 - 시 본청 및 시의회 사무국 3급 이상 공무원 - 구청장	
2. 승용 (의전용)	대형·중형·소형· 경형·다목적승용차 (3,500cc 이하)	- 시 본청 - 시의회	
3. 승용 (업무용)	가. 중형승용차	- 시 본청 - 구청 - 시의회	
	나. 소형승용차	단위행정기관	
	다. 경형승용차	단위행정기관	
	라. 다목적승용차	단위행정기관	
4. 승합용	가. 대형승합차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경과
	나. 중형승합차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다. 소형승합차	단위행정기관	
	라. 경형승합차	단위행정기관	
5. 화물용	가. 대형화물차	단위행정기관	
	나. 중형화물차	단위행정기관	
	다. 소형화물차	단위행정기관	
	라. 경형화물차	단위행정기관	

6. 특수용	가. 청소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경과
	나. 구급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경과 (소방장비는 「소방기본법」을 따름)
	다. 분노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경과 (소방장비는 「소방기본법」을 따름)
	라. 진료차	• 단위행정기관	
	마. 이동수리차	• 단위행정기관	
	바. 트랙트랙터	• 단위행정기관	
	사. 트레일러	• 단위행정기관	
	아. 전인차	• 단위행정기관	
	자. 소방고가사다리차	• 단위행정기관	
	차. 소방굴절사다리차	• 단위행정기관	
	카. 소방방수탐차	• 단위행정기관	
	타. 소방화학차	• 단위행정기관	
	파. 소방배연차	• 단위행정기관	
	하. 소방조명차	• 단위행정기관	
	거. 소방펌프차	• 단위행정기관	
	너. 소방물탱크차	• 단위행정기관	
	더. 소방구조공작차	• 단위행정기관	
	러. 소방구급차	• 단위행정기관	
	머. 소방지휘차	• 단위행정기관	
	버. 소방순찰차	• 단위행정기관	
	서. 소방진단차	• 단위행정기관	
	어. 그 밖의 자동차	• 단위행정기관	

※ 비고

1. 위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차량정수배정 등 검토조서

(임시차량 정수배정, 차량신규정수, 차량교체,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나. 정 원 : 명 (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 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차량 보유현황

용도별	규모· 유형	차 이름	차량정수 배 정 일	등 록		배치부서	용 도
				변 호	일 자		

나. 증차사유 (정수이체를 포함한다)

[작성방법]

- ① 기구·정원 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어떤 사유로 증차가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입,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사유로 증차가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사유

[작성방법]

- ① 최단운행연한 기준 초과 여부를 기재한다.
- ②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총운행거리를 기재한다. (주행거리계의 사진을 첨부한다)
- ③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 ④ 수리견적 내용을 기재한다.(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한다)
- ⑤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사고장소·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경찰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 ⑥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⑦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라. 차량교환사유

- (1)-----
- (2)-----

마. 예산소요판단

- (1) 총소요예산 : 천원
- (2) 차량구입비 : 천원
- (3) 운전원인건비 : 천원
- (4) 차량유지비 : 천원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1) 지역특수성 :
- (2) 행정구역 :
- (3) 면 적 :
- (4) 가 구 :
- (5) 인 구 :

사. 차량운행수요

(년도 기준)

출 장 업 무 명	차 량 운 행		승 차 인 원			비 고
	횟 수	거 리	연 간	월 간	일 일	
계						

[비고] 사업용 차량은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기재한다.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수 신 :

발신

인

제 목 :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 요청

1.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용차량에 대한 차고지 별도지정을 승인(취소)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 내역

기관명	사용부서	사 용 현 황						
		차 이름	차량번호	직급	성명	용도(목적)	차고지(주소)	지정기한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검토조서

1. 일반현황

가. 기 구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 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판단

○ 차량 보유현황

차량번호	차 이 름	규모·유형	최초등록일	구매금액 (천 원)	배치부서	용도	비고

3.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내역

부서명	차 이 름	차량번호	직급	성명	용도(목적)	차고지(주소)	지정기간

4.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사유

〔작성방법〕

- 업무의 특성에 따른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해 긴급한 현장출동 등 해당 차량의 차고지 별도지정 내용(목적)을 설명하고 필요성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수 신 :

발신

인

제 목 :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 확인서

1. 승 인 번 호 : 제 호(일련번호)

2. 지 정 기 한 :

3. 승인(취소)일 :

4. 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내역

기관명	사용부서	사 용 현 황							승인 여부
		차 이름	차량번호	직급	성명	용도(목적)	차고지(주소)	지정기한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검토조서

1. 일반현황

가. 기 구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 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 차량 보유현황

차량번호	차 이 름	규모·유형	최초등록일	구매금액 (천원)	배치부서	용도	비고

3.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신청(취소) 내역

부서명	차 이 름	규모·유형 (차량번호)	용도(목적)	사용기간 (최장 1년)

4.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신청(취소) 사유

【작성방법】

○ 업무의 특성, 고정배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수 신 :

발신

인

제 목 :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승인(취소) 확인서

1. 승 인 번 호 : 제 호(일련번호)

2. 지 정 기 한 :

3. 승인(취소)일 :

4. 차량 고정배차 승인(취소)내역

소속기관	사용부서	차 이 름	차량번호	정수번호	용도(목적)	승인(취소) 여부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 의회사무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u>임차차량</u>을 포함한다. 2. “<u>임차차량</u>”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u>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u>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11. (생략) 12. “직원자가운전제”란 <u>운전원이 아닌</u> 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u>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u>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 ----- ----- ----- ----- ----- -----임시 <u>차량</u>-----. 2. -<u>임시차량</u>----- ----- ----- ----- -----임차하여----- -----. 3.~11. (현행과 같음) 12. -----운전직원----- ----- -----. 제5조(정수배정) ① ----- -----고려---<u>차량총괄</u> <u>부서</u>-----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차량의 교체)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차량의 교체)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체하려는 차량은 별표 1의 신규차량 교체기준을 충족하지 않고서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 구매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0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의 신규구입·교체구입·관리전환을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입 및 임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구입 및 임차비율-----
-----.

제9조(차량교환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업무 및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차량 용도를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관리·운행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10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의 신규구입·교체구입·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 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

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정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한다. 다만, 소요조회 중인 차량은 차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규모·유형별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8조(차량의 관리방법) 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

5호서식에 따른 배정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예정인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할 차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했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정수배정 제한) -----

-----차량정수배정

-----.

제18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
-----운전직원-----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
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
무관리, 그 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
를 전담한다.

③ (생 략)

④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
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
서는 아니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위치 및 방법에 따라 슬로건
(시 마크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
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
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신 설>

<신 설>

-----한꺼번에-----
-----.

② -----
-----운전직원-----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심벌마크-----

-----.

⑤ (현행과 같음)

⑥ 차량은 지정된 차고지에 두어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고
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배차·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
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시장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
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한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
3.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하여 다
른 지역에 숙박하는 경우

⑦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검토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승인(취
소) 확인서를 통보하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차고지 별도지정 관리대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제19조(배차신청)</u>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하루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차량배차를 신청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배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차량 배차 승인서를 당직사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제20조(배차승인)</u> 집중관리부서는 차량 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차량운행신청 허가는 당직사령이 행한다.	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⑧ 감사·조사 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용 차량의 고정배차가 필요한 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1월 재요청 승인을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승인(취소)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취소) 확인서를 통보하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⑩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승인 시 필요한 경우 운전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u>제19조(배차신청)</u> ① 차량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집중관리부서에 차량배차를 신청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차량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직사령에게 배차신청을 해야 한다. <u>제20조(배차승인)</u> ①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이외
---	--

제22조(유류사용의 정산) ① 차량 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에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차량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6. (생략)

제26조(차고운영)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집중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에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의 차량배차신청 허가는 당직사령이 한다.

제22조(유류사용의 정산) ① -----

-----유류의 잔량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운전직원-----

-----.

제23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
-----이용하여 다음-----

-----서류를-----
-----.

1.~6. (현행과 같음)

제26조(차고지 운영)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차고지 내에는 운전직원 대기실·주차장·세차장·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직원의 관리 등 차고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원은 차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4장 운전원 관리

제27조(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8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5. (생략)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13. (생략)

제29조(안전운전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해당 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0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7. (생략)

제31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전용차로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4장 운전직원 관리

제27조(근무지침) ① 운전직원-----
-----주의의무로써-----
-----.

② 운전직원-----

-----.

제28조(금지사항) 운전직원-----
-----.

1.~5. (현행과 같음)

6. -----하지-----

7.~13. (현행과 같음)

제29조(안전운전 의무) ① 운전직원-----

-----.

② 운전직원-----

-----.

제30조(사고보고) 운전직원-----

-----.

1.~2. (현행과 같음)

3. -----운전직원-----

4.~7. (현행과 같음)

제31조(운전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직원-----

-----운전직원-----
-----.

제32조(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운전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직원자가운전제) ①~② (생략)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④~⑤ (생략)

제35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1박 2일 이상 관외출장 시에는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자가운전대상) 단위행정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면허종류 및 연령에 따라 배차 승인한다. 단, LPG 차량 및 긴급차량은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정한다.

제37조(유류정산) 차량운행 전 유류 잔량 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출장 중 유류 주입 시에는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운행종료)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운행 후 차량 배차 시스템내의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미리 알려주어 정비·수리 등의

제32조(안전교육 등) -----
---운전직원-----

-----.

제33조(운전직원 교류) -----

-----운전직원-----
-----.

제34조(직원자가운전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운전직원-----.

④~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36조(배차기준) 집중관리부서는 직원자가운전자의 면허종류 및 나이에 따라 배차를 승인한다. 다만, LPG차량 및 긴급차량은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정하여 승인한다.

제37조(차량확인)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운행 전 유류 잔량 및 차량의 외관 등을 확인한 후 운행해야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관외출장 중 유류 주입이 필요한 경우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38조(운행종료)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운행 후 차량 배차 시스템 내의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이를 알려주어 정비·수리 등의

<u>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u> ② <u>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으로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u> ③ <u>근무시간 이후 운전원(자가운전자)은 차량을 차고에 입고한 후 차량열쇠를 당직실에 반납하여야 한다.</u> ④ <u>당직사령은 당직 중 차량운행허가, 운행차량 입고유무 등 선량한 차량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u>	<u>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u>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중관리부서에서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자를 대신하여 운행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u> ③ <u>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u> ④ <u>근무시간 이후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한 후 차량열쇠를 집중관리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당직실에 반납해야 한다.</u> ⑤ <u>당직사령은 당직 중 차량운행허가, 운행차량 입고 여부 확인 등 차량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u>
---	--

6. 특수용	가. 청소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u>최초등록일부터 7년간</u>
	나. 구급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u>최초등록일부터 7년간</u> (소방장비는 「소방기본법」을 따름)
	다. 분노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u>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u> (소방장비는 「소방기본법」을 따름)
	라. 진료차	• 단위행정기관	
	마. 이동수리차	• 단위행정기관	
	바. <u>트럭트렉터</u>	• 단위행정기관	
	사. 트레일러	• 단위행정기관	
	아. <u>렉카차</u>	• 단위행정기관	
	자. 소방고가사다리차	• 단위행정기관	
	차. 소방굴절사다리차	• 단위행정기관	
	카. 소방방수탑차	• 단위행정기관	
	타. 소방화학차	• 단위행정기관	
	파. 소방배연차	• 단위행정기관	
	하. 소방조명차	• 단위행정기관	
	거. 소방펌프차	• 단위행정기관	
	너. 소방물탱크차	• 단위행정기관	
	더. 소방구조공작차	• 단위행정기관	
	러. 소방구급차	• 단위행정기관	
	머. 소방지휘차	• 단위행정기관	
	버. 소방순찰차	• 단위행정기관	
	서. 소방진단차	• 단위행정기관	
	어. <u>기타</u>	• 단위행정기관	

※ 비고

1. 위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 설>

6. 특수용	가. 청소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u>최초 등록일부터 7년 경과</u>
	나. 구급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u>최초 등록일부터 7년 경과</u> (소방장비는 「소방기본법」을 따름)
	다. 분노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u>최초 등록일부터 7년 경과</u> (소방장비는 「소방기본법」을 따름)
	라. 진료차	• 단위행정기관	
	마. 이동수리차	• 단위행정기관	
	바. <u>트럭트렉터</u>	• 단위행정기관	
	사. 트레일러	• 단위행정기관	
	아. <u>견인차</u>	• 단위행정기관	
	자. 소방고가사다리차	• 단위행정기관	
	차. 소방굴절사다리차	• 단위행정기관	
	카. 소방방수탑차	• 단위행정기관	
	타. 소방화학차	• 단위행정기관	
	파. 소방배연차	• 단위행정기관	
	하. 소방조명차	• 단위행정기관	
	거. 소방펌프차	• 단위행정기관	
	너. 소방물탱크차	• 단위행정기관	
	더. 소방구조공작차	• 단위행정기관	
	러. 소방구급차	• 단위행정기관	
	머. 소방지휘차	• 단위행정기관	
	버. 소방순찰차	• 단위행정기관	
	서. 소방진단차	• 단위행정기관	
	어. <u>그 밖의 자동차</u>	• 단위행정기관	

※ 비고

1. 위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규 모 별		
		대형·다목적승용차	중형승용차	그 밖의 승용차
가. 시본청	41대	9대 • 의전용 3대 • 시장 전용 1대 • 부시장 전용 2대 • 3급 이상 공무원 전용 3대	업무용 2대	30대
나. 구청	17대	• 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1대	15대
다. 사업소	6대	-	업무용 1대	5대
라. 시의회	4대	2대 • 의장 전용 1대 • 3급 이상 공무원 전용 1대	의전용 1대	1대

(이하 생략)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규모 또는 유형별		
		대형·중형·소형·경형· 다목적승용차	중형·소형·경형· 다목적승용차	
가. 시 본청	41대	9대 • 시장 전용 1대 • 부시장 전용 2대 • 3급 이상 공무원 전용 3대 • 의전용 3대	업무용 32대	<삭제>
나. 구청	17대	• 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16대	
다. 사업소	6대	-	업무용 6대	
라. 시의회	4대	3대 • 의장 전용 1대 • 3급 이상 공무원 전용 1대 • 의전용 1대	업무용 1대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생 략)

1.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 략)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별지 제1호서식]

(생 략)

1.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제9조의2-

-----.

(현행과 같음)

-----차 이 름-----

[별지 제4호서식]

(생 략)

제 목 : 차량정수 배정
차량 관리전환 확인서 송부
차량 교체승인
<신 설>

(생 략)

[별지 제4호서식]

(현행과 같음)

제 목 : 차량정수 배정
차량 관리전환 확인서 송부
차량 교체승인
임시차량 정수배정

(현행과 같음)

[별지 제7호서식]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량신규정수 · 차량교체 ·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나. 정 원 : 명 (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공용차량 보유대수

용도별	규모 · 유형	차 이 름	차량정수 배 정 일	등 록		배치부서	용 도
				번 호	일 자		

나. 증차사유 (정수이체를 포함한다)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별지 제7호서식]

차량정수배정 등 검토조서

(임시차량 정수배정, 차량신규정수, 차량교체,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나. 정 원 : 명 (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 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차량 보유현황

용도별	규모 · 유형	차 이 름	차량정수 배 정 일	등 록		배치부서	용 도
				번 호	일 자		

나. 증차사유 (정수이체를 포함한다)

[작성방법]

① 기구·정원 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입,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사유

[작성요령]

- ① 최단운행기준연한의 초과여부를 기재한다.
②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총운행거리를 기재한다. (주행거리계의 사진을 첨부한다)
③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④ 수리견적내용을 기재한다. (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한다)
⑤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사고장소·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한다)
⑥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⑦ 그 밖의 참고 사항을 기재한다.

라. 차량교환사유

- (1)-----
(2)-----

마. 예산소요판단

- (1) 총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어떤 사유로 증차가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입,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사유로 증차가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사유

[작성방법]

- ① 최단운행연한 기준 초과 여부를 기재한다.
②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총운행거리를 기재한다. (주행거리계의 사진을 첨부한다)
③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④ 수리견적 내용을 기재한다.(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한다)
⑤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사고장소·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경찰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⑥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⑦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라. 차량교환사유

- (1)-----
(2)-----

마. 예산소요판단

- (1) 총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

(4) 차량유지비 : 천원

바. 그 밖의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수요

(년도기준)

출 장 업 무 명	차 량 운 행		승 차 인 원			비 고
	회 수	거 리	연 간	월 간	일 일	
계						

〔비고〕 사업용차량은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기재한다.

(3) 운전원인건비 : 천원

(4) 차량유지비 : 천원

바. 그 밖의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수요

(년도 기준)

출 장 업 무 명	차 량 운 행		승 차 인 원			비 고
	회 수	거 리	연 간	월 간	일 일	
계						

〔비고〕 사업용 차량은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기재한다.

<신 설>

[별지 제10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수 신 :

발신

인

제 목 :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 요청

1.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용차량에 대한 차고지 별도지정을 승인(취소)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 내역

기관명	사용부서	사 용 현 황						
		차 이름	차량번 호	직 급	성명	용도(목적)	차고지(주소)	지정기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11호서식]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검토조서

1. 일반현황

가. 기 구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 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판단

○ 차량 보유현황

차량번호	차 이 름	규모·유형	최초등록일	구매금액 (천원)	배치부서	용도	비고

3.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내역

부서명	차 이 름	차량번호	직급	성명	용도(목적)	차고지(주소)	지정기간

4.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사유

[작성방법]

- 업무의 특성에 따른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해 긴급한 현장출동 등 해당 차량의 차고지 별도지정 내용(목적)을 설명하고 필요성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신 설>

[별지 제12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수 신 :

발신

①

제 목 :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 확인서

1. 승 인 번 호 : 제 호(일련번호)

2. 지정 기 한 :

3. 승인(취소)일 :

4. 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내역

[illegible]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13호서식]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1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수 신 :

발신

인

제 목 :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승인(취소) 요청

1.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고정배차 승인(취소)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 고정배차 승인(취소) 내역

소속기관	사용부서	차량 규모·유형	차 이름	용도(목적)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15호서식]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검토조서

1. 일반현황

가. 기 구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 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 차량 보유현황

차량번호	차 이름	규모·유 형	최초등록 일	구매금액 (천원)	배치부서	용도	비고

3.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신청(취소) 내역

부서명	차 이름	규모·유형 (차량번호)	용도(목적)	사용기간 (최장 1년)

4.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신청(취소) 사유

【작성방법】

○ 업무의 특성, 고정배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신 설>

[별지 제16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수 신 : 발신 인 제 목 :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승인(취소) 확인서 1. 승 인 번 호 : 제 호(일련번호) 2. 지 정 기 한 : 3. 승인(취소)일 : 4. 차량 고정배차 승인(취소)내역						
소속기관	사용부서	차 이 름	차량번호	정수번호	용도(목적)	승인(취소) 여부

<신 설>

[별지 제17호서식]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한국국제전시장 1, 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한국국제전시장 1, 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10. 11.
고양시 장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1,497,506.9	-	1,497,506.9	100.0	· 단계별 구역면적 - 1단계 : 754,797.0㎡ - 2단계 : 742,709.9㎡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032.0	-	10,032.0	0.7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139,061.3	증) 10,588.4	1,149,649.7	76.8	· 단계별 증감 내역 - 1단계 : 증) 6,397.3㎡ - 2단계 : 증) 4,191.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48,413.6	감) 10,588.4	337,825.2	22.5	· 단계별 증감 내역 - 1단계 : 감) 6,397.3㎡ - 2단계 : 감) 4,191.1㎡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대화동 2600-2 일원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10,588.4㎡	· 제1, 2전시장 및 제3전시장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활성화시설(여반콘코스)이 기존의 뒤편공원처럼 단순히 연결통로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한국국제전시장 1, 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754,797.0	-	754,797.0	100.0	
일반상업지역	635,385.1	증) 6,397.3	641,782.4	85.0	
자연녹지지역	119,411.9	감) 6,397.3	113,014.6	15.0	

3)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7~61	보조 간선	823	대1-3 (대화동1208)	광로3-8	일반 도로		고양시고시 제2011-63호 (2011.4.29)	· 공원과 중복결정 (L=100m)
변경	광로	2	1	57~61	보조 간선	823	대1-3 (대화동1208)	광로3-8	일반 도로		고양시고시 제2011-63호 (2011.4.29)	· 공원과 중복결정 (L=80m) · 입체적결정 (일부)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6,086 (480)	대로2-9 (백석동1508)	중로1-68 (대화동2513)	일반 도로		경고 제2003-5031호 (2003.4.21)	
기정	대로	1	3	35	주간선 도로	2,930 (441)	대2-15 (대화동2514)	대3-11 (대화동2340)	일반 도로		경고 제2003-5031호 (2003.4.21)	
기정	대로	1	13	35	보조 간선	443	대2-15 (대화동1098-1)	중3-79 (대화동2562)	일반 도로		경고 제2003-5031호 (2003.4.21)	
기정	대로	1	14	35	국지 도로	45	대2-15 (대화동1396-69)	전시장 남측경계 (대화동1396-60)	일반 도로		고양시고시 제2011-63호 (2011.4.29)	
변경	대로	1	14	35	국지 도로	45	대2-15 (대화동1396-69)	전시장 남측경계 (대화동1396-60)	일반 도로		고양시고시 제2011-63호 (2011.4.29)	· 입체적결정 (일부)
기정	대로	2	15	30~37	집산 도로	697	대1-3 (대화동1208)	동측경계 (대화동140)	일반 도로		경고 제2003-5031호 (2003.4.21)	
기정	대로	3	36 (46)	28~31	보조 간선	450	대2-15 (대화동1208)	대1-2 (대화동140)	일반 도로		경고 제2003-5031호 (2003.4.21)	
기정	대로	3	37 (47)	25	집산 도로	447	대2-15 (대화동1062)	대1-2 (대화동140)	일반 도로		경고 제2003-5031호 (2003.4.21)	
기정	대로	3	38 (48)	25	집산 도로	726	대3-46 (대화동139)	대2-15 (대화동1300-2)	일반 도로		경고 제2003-5031호 (2003.4.2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77	20	국지 도로	119	대3-47 (대화동1059-1)	부지중앙 (대화동1058-2)	일반 도로		경고 제2003-5031호 (2003.4.21)	
기정	중로	2	119	18.5	국지 도로	178	대1-13 (대화동1031-2)	대화동2307-5	일반 도로		경고 제2003-5031호 (2003.4.21)	
기정	중로	2	138 (120)	15	국지 도로	24	부지중앙 (대화동2607-3)	대3-38 (대화동2607-2)	일반 도로		경고 제2003-5031호 (2003.4.21)	
기정	중로	2	140	15 ~18	국지 도로	196.5	중2-137 (대화동2307-12)	대3-48 (대화동2600-6)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176 (1)	12	국지 도로	245	대2-15	공원경계	일반 도로		고양시고시 제2008-53호 (2008.5.28)	
기정	중로	3	103	12	국지 도로	1,004	소로1-70 (대화동 2306)	대로 3-37 (대화동 1050-2)	일반 도로		경고 제2003-5031호 (2003.4.21)	· 중복결정 (공공공지)
기정	소로	1	170	10	국지 도로	110	중3-79 (대화동2307-2)	중2-119 (대화동2607-4) (2013-173호)	보행자 전용 도로		경고 제2003-5031호 (2003.4.21)	· 보행자도로

※ ()는 지구단위구역 내 연장임

※ 중복결정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 입체적결정에 관한 사항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참조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2-1	· 공원 중복결정 연장 변경 - 연장 : 100m → 80m · 도로 일부 입체적시설 결정(신설)	· 공원과 중복결정한 연장 축소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위한 획지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입체적시설 결정
대로1-14	· 도로 일부 입체적시설 결정(신설)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위한 획지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입체적시설 결정

(2) 주차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82	국제전시장 공원	근린공원	대화동 일원	42,416.2	-	42,416.2	경고 제2003-5031호 (2003.4.21)	
기정	1	문화공원 제1호공원	문화공원	대화동 일원	8,587.4	-	8,587.4	고양시고시 제2011-63호 (2011.4.29)	
변경	2	문화공원 제2호공원	문화공원	대화동 일원	21,149.9	감) 3,983.0	17,166.9	고양시고시 제2011-63호 (2011.4.29)	광로2-1과 중복결정

※ 중복결정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문화공원 제2호공원	- 면적변경 - 면적 : 감) 3,983.0㎡ - 중복결정 구간연장 축소 - L=100m → L=80m	- 문화공원 제2호공원의 일부를 제척하고, 획지 E1에 편입 - 문화공원 제2호공원의 일부를 제척함에 따라 광로2-1과 중복결정 구간연장 축소

(2) 공공공지 : 변경없음

다) 방재시설 : 변경없음

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변경사항				최초 결정일	비고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광로 2-1	도로	대화동 2607 일원	길이	-	증) 74.9m	74.9m	-	
				폭	-	증) 57~61.0m (증) 41.0~43.2m)	57~61.0m (41.0~43.2m)		
				높이	-	증) EL+7.10~14.85m	EL+7.10~14.85m		
				면적	-	증) 4,806.0㎡ (증) 3,577.3㎡)	4,806.0㎡ (3,577.3㎡)		
신설	대로 1-14	도로	대화동 2607-1 일원	길이	-	증) 25.0m	25.0m	-	
				폭	-	증) 0~25.9m	0~25.9m		
				높이	-	증) EL+7.10~14.85m	EL+7.10~14.85m		
				면적	-	증) 136.4㎡	136.4㎡		

※ 광로2-1은 1·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있으며, ()는 1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도로 (광로2-1)	- 입체적결정(신설) - 길이 : 74.9m - 폭 : 57.0~61.0m(41.0~43.2m) - 높이 : EL+7.10~14.85m - 면적 : 4,806.0㎡ (3,577.3㎡)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위한 획지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입체적시설로 결정함

※ 광로2-1은 1·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있으며, ()는 1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임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 국제전시장

■ 국제전시장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대지분할 또는 합필(공동건축)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E1(대화동 2306)	229,741.9	-	223,344.6	증) 6,397.3	229,741.9	-	전시장
기정	E2-1(대화동 2307-2)	7,169.6	-	7,169.6	-	7,169.6	-	부대시설

■ 국제전시장 결정(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E1 (대화동 2306)	· 획지선형 변경 및 면적 확장 증) 6,397.3㎡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시 활성화시설 도입을 위한 획지면적 확장

나) 도시공간시설

■ 도시공간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대지분할 또는 합필(공동건축)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P1	65,918.5	1(대화동 2600-1)	8,587.4	-	8,587.4	-	문화공원1
변경			2(대화동 2600-2)	14,575.9	감) 3,029.4	11,546.5	-	문화공원2
기정			3(대화동 2601-1)	1,618.3	-	1,618.3	-	근린공원
기정			4(대화동 2601-1)	4,846.6	-	4,846.6	-	근린공원
기정			5(대화동 2600-6)	6,195.4	-	6,195.4	-	근린공원
기정			6(대화동 2602-2)	11,526.9	-	11,526.9	-	근린공원
기정			7(대화동 2604)	8,117.4	-	8,117.4	-	근린공원
기정			8(대화동 1050-176)	10,111.6	-	10,111.6	-	근린공원
변경			9(대화동 2607)	4,322.0	감) 953.6	3,368.4	-	문화공원2 (광로2-1과 중복결정)
기정	P2	6,701.3	-(대화동 2600-4)	6,701.3	-	6,701.3	-	주차장
기정	P3	10,033.3	1(대화동 2306-2)	3,130.5	-	3,130.5	-	공공공지
기정			2(대화동 2307-8)	1,567.3	-	1,567.3	-	공공공지
기정			3(대화동 1050-181)	1,390.3	-	1,390.3	-	공공공지
기정			4(대화동 1050-184)	2,468.2	-	2,468.2	-	공공공지
기정			5(대화동 1050-180)	1,477.0	-	1,477.0	-	공공공지
기정	D1	2,252.0	-(대화동 2600-2)	2,252.0	-	2,252.0	-	유수지 (공원과 중복결정)

■ 도시공간시설 결정(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P1-2 (대화동 2306)	· 공원선형 변경 감) 3,029.4㎡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획지면적 확장으로, 문화공원 일부 면적 감소
P1-9 (대화동 2306)	· 공원선형 변경 감) 953.6㎡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획지면적 확장으로, 문화공원 일부 면적 감소

다) 한류문화체험시설

라) 전시지원시설 및 활성화시설(특별계획구역)

5)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6)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7) 대지 내 공지 및 동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8)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시행지침(1단계)

신설

제23조의 1(맞벽건축)

- ① 맞벽건축이 표시된 전시장부지의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문화및집회시설) 포함]은 인접한 대지의 다른 전시장과 맞벽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 ② 도시개발구역내 제1, 2전시장은 단계별로 계획되어왔으며, 전시장의 통합적인 계획이나 연계성, 효율성을 위하여 제3전시장 건립시 활성화시설(어반콘코스)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는 지역활성화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전시장의 기능을 넘어 다문화복합공간으로서 건축물이 연계되도록 맞벽건축을 허용하고자 한다.
- ③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여야하며,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④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며,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하고,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m 이하로 하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적용은 가능하다. 복도와 통로는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토록 한다.
- ⑤ 도면표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통로)	
-----------------	--

신설

제43조의 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① 입체적으로 설치한 입체공중보행통로(덮개공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제1, 2전시장과 제3전시장의 연계성 강화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지역활성화시설(어반콘코스)을 도입하고자 입체적 결정구간을 지정한다.
- ② 전시장부지와 킨텍스1로를 입체적으로 결정하는 구간은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 ③ 국제전시장 제1, 2전시장과 제3전시장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킨텍스1로)의 길이, 폭, 높이, 면적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입체적으로 결정되는 도로의 평면과 단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④ 입체적 결정을 통한 지역활성화시설(어반콘코스) 도입시 건축계획에 따른 구조물이 도로에 설치될 경우 충분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안정을 위하여 킨텍스1로의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체결정된 도로상 설치가 가능하다.
- ⑤ 도로(킨텍스1로)가 입체적으로 결정되며 확장되는 전시장부지(획지)에 대하여 각 전시장의 지역활성화시설(어반콘코스)가 연속적으로 도입되도록 「건축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인 경우)을 허용하고, 이 경우 동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도면표기

킨텍스로 입체적 결정 구간	
----------------	--

9)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개발 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42,709.9	-	742,709.9	100.0	
준주거지역	10,032.0	-	10,032.0	1.3	
일반상업지역	503,676.2	증) 4,191.1	507,867.3	68.4	
자연녹지지역	229,001.7	감) 4,191.1	224,810.6	30.3	

3)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7~61	보조간선도로	823	대로1-3	광로3-8	일반도로		경고 제2003-5031호 (2003.4.21)	• 공원과 중복결정 (L=100m)
변경	광로	2	1	57~61	보조간선도로	823	대로1-3	광로3-8	일반도로		경고 제2003-5031호 (2003.4.21)	• 공원과 중복결정 (L=80m) • 입체적결정 (일부)
기정	광로	2	2	52.5~55.5	주간선도로	1,520	대화동 1099-2	대화동 1942-49	일반도로		경고 제2003-5088호 (2003.9.15)	
기정	광로	3	1	44.5	집산도로	216	광로3-8	대화동 1371	일반도로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기정	대로	1	1	38~44	집산도로	342	대화동 1396-192	대화동 1396-125	일반도로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변경	대로	1	1	38~44	집산도로	342	대화동 1396-192	대화동 1396-125	일반도로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 선형 및 면적 변경
기정	대로	1	2	38	국지도로	40	광로2-1	대화동 1396-55	일반도로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변경	대로	1	2	38	국지도로	40	광로2-1	대화동 1396-55	일반도로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 입체적결정 (일부)
기정	대로	2	1	33~36	집산도로	580	광로2-1	중로1-2	일반도로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기정	대로	2	2	30	집산도로	224	대로1-1	중로1-2	일반도로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2	국지 도로	53	대로2-1	대화동 1352-1	일반 도로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기정	중로	1	2	22~ 25	국지 도로	824	중로3-1	대화동 1366-1	일반 도로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기정	중로	1	3	20	국지 도로	147	대로3-2	중로1-3	일반 도로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40	중로1-2	대화동 1396-328	일반 도로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신설	소로	2	1	9	국지 도로	39	고양대로	대화동 2710	일반 도로		-	· 경관녹지1과 중복결정 (L=19.6m)

※ ()는 지구단위구역 내 연장임

※ 중복결정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 입체적결정에 관한 사항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참조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2-1	· 변경, 보조간선도로 · 폭원, 연장, 면적 변경 없음 · 중복결정 연장 변경 - (기정)L=100m → (변경)L=80m · 도로 일부 입체적시설 결정 - 입체적 시설 결정(변경)조서 참조	· 공원과 중복결정한 연장 축소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위한 획지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입체적시설 결정
대로 1-1	· 변경, 집산도로 · 폭원, 연장 변경 없음 · 도로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증) 970.0㎡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에 필요한 출입구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선형 및 일부 면적 변경 증) 970.0㎡
대로 1-2	· 변경, 국지도로 · 폭원, 연장, 면적 변경 없음 · 도로 일부 입체적시설 결정 - 입체적 시설 결정(변경)조서 참조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위한 획지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를 입체적시설로 결정함
소로2-1	· 변경(신설), 주간선도로 - 폭원 : 9m - 연장 : 39.7m - 면적 : 363.2㎡ · 경관녹지1과 중복결정 - 연장 : 19.6m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에 필요한 출입구 조성을 위해 고양대로변 지하주차장 출입 램프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 주차장 출입 지하램프 구간 일부 경관녹지1과 중복결정

(2) 주차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62,668.2	감) 3,066.9	59,601.3	-	-
기정	1	제1호 수변공원	수변 공원	일산서구 대화동 2725번지	12,482.9	-	12,482.9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
기정	1	제1호 체육공원	체육 공원	일산서구 대화동 2708번지	25,374.3	-	25,374.3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유수지와 중복결정
기정	1	제1호 근린공원	근린 공원	일산서구 대화동 2721번지	17,287.1	-	17,287.1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
변경	1	제1호 문화공원	문화 공원	일산서구 대화동 2718번지	7,523.9	감) 3,066.9	4,457.0	고양시고시 제2009-177호 (2009.7.3)	광로2-1과 중복결정

※ 중복결정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제1호 문화공원	- 면적변경 - 면적 : 감) 3,066.9㎡ - 중복결정 구간연장 축소 - L=100m → L=80m	- 제1호 문화공원의 일부를 제척하고 획지 E1에 편입 - 제1호 문화공원의 일부를 제척함에 따라 광로2-1과 중복결정 구간연장 축소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94,747.3	감) 568.5	94,178.8	-	
변경	1	녹지	경관 녹지	일산서구 대화동 2715번지 일원	32,310.0	감) 568.5	31,741.5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일산서구 대화동 2714번지	1,204.2	-	1,204.2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기정	3	녹지	경관 녹지	일산서구 대화동 2713번지	30,800	-	30,800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기정	4	녹지	경관 녹지	일산서구 대화동 2722번지	8,753.8	-	8,753.8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기정	5	녹지	경관 녹지	일산서구 대화동 2719번지	6,793.7	-	6,793.7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기정	6	녹지	경관 녹지	일산서구 대화동 2723번지	14,885.6	-	14,885.6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 (2007.7.13)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 녹지면적 축소 - 면적 : 감) 568.5㎡ · 도로(소로2-) 중복결정 - 연장 : 19.6m	· 경관녹지 선형 변경 및 일부 제척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시 진출입구 지하램프 구간 조성을 위한 선형 변경 및 도로(소로2-) 중복결정 감) 186.9㎡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시 진출입구 조성 및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선형 변경 및 도로(대로1-1)에 편입 감) 381.6㎡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라)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 변경없음

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변경사항				최초 결정일	비고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광로2-1	도로	대화동 2607 일원	길이	-	증) 74.9m	74.9m	-	
				폭	-	증) 57.0~61.0m (증) 16.1~17.0m)	57.0~61.0m (16.1~17.0m)		
				높이	-	증) EL+7.10~14.85m	EL+7.10~14.85m		
				면적	-	증) 4,806.0㎡ (증) 1,228.7㎡)	4,806.0㎡ (1,228.7㎡)		
신설	대로1-2	도로	대화동 2727 일원	길이	-	증) 35.0m	35.0m	-	
				폭	-	증) 2.3~29.0m	2.3~29.0m		
				높이	-	증) EL+7.10~14.85m	EL+7.10~14.85m		
				면적	-	증) 241.0㎡	241.0㎡		

※ 광로2-1은 1·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있으며, ()는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도로 (광로2-1)	· 입체적결정(신설) - 길이 : 74.9m - 폭 : 57.0~61.0m(16.1~17.0m) - 높이 : EL+7.10~14.85m - 면적 : 4,806.0㎡(1,228.7㎡)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위한 획지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입체적시설로 결정함
신설	도로 (대로1-2)	· 입체적결정(신설) - 길이 : 35.0m - 폭 : 2.3~29.0m - 높이 : EL+7.10~14.85m - 면적 : 241.0㎡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위한 획지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입체적시설로 결정함

※ 광로2-1은 1·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있으며, ()는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임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 국제전시장

■ 국제전시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대지분할 또는 합필(공동건축)	
				기 정	변 경	변 경 후		
E1	E1	279,150.8	1	203,559.7	증) 79,782.2	283,341.9		전시장
			2	75,591.1	감) 75,591.1	-		전시장
E2	E2	67,214.3	-	67,214.3	-	67,214.3		야외전시장
F1	F1	3,432.0	-	3,432.0	-	3,432.0		변전소
F2	F2	6,600.0	-	6,600.0	-	6,600.0		열공급시설
F3	F3	2,772.6	-	2,772.6	-	2,772.6		양수시설(경관녹지내)

■ 국제전시장 결정(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E1-1	· 획지 합병 - 증) 79,782.2㎡	· 통합된 국제전시장 조성을 위해 E1-1, E1-2 합병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시 활성화시설 도입을 위한 획지면적 확장
E1-2	· 획지 삭제 - 감) 75,591.1㎡	

나) 전시지원시설 및 복합시설 : 변경없음

다) 도시공간시설

■ 도시공간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대지분할 또는 합필(공동건축)	
				기 정	변 경	변 경 후		
P1	P1	17,287.0	1	17,287.0	-	17,287.0		공원
P2	P2	12,482.9	2	12,482.9	-	12,482.9		공원
P3	P3	16,374.0	3	16,374.0	-	16,374.0		공원(유수지와 중복결정)
P4	P4	3,109.5	4	5,830.9	감) 2,721.4	3,109.5		공원
P5	P5	1,347.5	5	1,693.0	감) 345.5	1,347.5		공원(광로2-1과 중복결정)
J1	J1	18,082.4	1	18,082.4	-	18,082.4		주차장
J2	J2	4,120.6	2	4,120.6	-	4,120.6		주차장
G1	G1	8,753.8	1	8,753.8	-	8,753.8		경관녹지
G2	G2	14,885.6	2	14,885.6	-	14,885.6		경관녹지
G3	G3	30,800.0	3	30,800.0	-	30,800.0		경관녹지
G4	G4	1,204.2	4	1,204.2	-	1,204.2		경관녹지
G5	G5	31,432.4	5	32,310.0	감) 568.5	31,741.5		경관녹지(양수장 포함)
G6	G6	6,793.7	6	6,793.7	-	6,793.7		경관녹지
F4	F4	9,000.3	-	9,000.3	-	9,000.3		유수지(공원과 중복결정)

※ 위의 P3(공원)은 유수지(9,000.3㎡)와 중복결정된 면적 제외

■ 도시공간시설 결정(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P4	· 공원선형 변경 감) 2,721.4㎡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전시장부지 확장으로, 문화공원1 변경
P5	· 공원선형 변경 감) 345.5㎡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전시장부지 확장으로, 문화공원1 변경
G5	· 녹지선형 변경 감) 568.5㎡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진출입구 개설, 가감속차로 설치, 도로 편입 등 경관녹지1 변경

라) 문화시설 및 공공청사 : 변경없음

5)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6)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7) 대지 내 공지 및 동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8)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시행지침(2단계)

신설	
제21조의 1(맞벽건축)	
① 맞벽건축이 표시된 전시장부지의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문화및집회시설) 포함]은 인접한 대지의 다른 전시장과 맞벽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② 도시개발구역내 제1, 2전시장은 단계별로 계획되어왔으며, 전시장의 통합적인 계획이나 연계성, 효율성을 위하여 제3전시장 건립시 활성화시설(어반콘코스)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는 지역활성화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전시장의 기능을 넘어 다문화복합공간으로서 건축물이 연계되도록 맞벽건축을 허용하고자 한다. ③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여야하며,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④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며,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하고,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m 이하로 하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적용은 가능하다. 복도와 통로는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토록 한다. ⑤ 도면표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통로)	
신설	
제43조의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① 입체적으로 설치한 입체공중보행통로(덮개공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제1, 2전시장과 제3전시장의 연계성 강화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지역활성화시설(어반콘코스)을 도입하고자 입체적 결정구간을 지정한다. ② 전시장부지와 킨텍스1로를 입체적으로 결정하는 구간은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제전시장 제1, 2전시장과 제3전시장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킨텍스1로)의 길이, 폭, 높이, 면적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입체적으로 결정되는 도로의 평면과 단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④ 입체적 결정을 통한 지역활성화시설(어반콘코스) 도입시 건축계획에 따른 구조물이 도로에 설치될 경우 충분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안정을 위하여 킨텍스1로의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체결정된 도로상 설치가 가능하다. ⑤ 도로(킨텍스1로)가 입체적으로 결정되며 확장되는 전시장부지(획지)에 대하여 각 전시장의 지역활성화시설(어반콘코스)가 연속적으로 도입되도록 「건축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인 경우)을 허용하고, 이 경우 동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도면표기	
킨텍스로 입체적 결정 구간	

9)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개발 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규정에 따라 도로의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고 양 시 장

1. 도로의 종류 : 시도
2. 노 선 명 : 시도93호선(향동지구~시도92호선)
3. 사용개시구간 :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8번지 ~ 용두동 46-1번지
(L=550m, B=30m, 간이입체교차로 1개소)
4. 중 요 경 과 지 :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용두동 일원
5. 개 시 일 시 : 2022년 10월 11일(화) 12:00~
6. 도면열람 장소 : 고양시청 제2별관 도로정책과
7. 도면열람 기간 : 10월 11일 ~ 11월 9일(30일간)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정책과(☎031-8075-2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지형도(위치도) 1부

위 치 도

○ 노 선 명 : 시도93호선(향동지구~시도92호선)

